

**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**(제12조제1항 관련)

1.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
  - 가. 삭제 <2012.12.21>
  - 나. 삭제 <2016. 5. 10.>
  - 다. 삭제 <2016. 5. 10.>
  - 라. 삭제 <2011.12.29>
  - 마. 어류·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·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
  - 바. 수산물가공잔재물(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)
  - 사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4)부터 15)까지 및 73)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·식물폐기물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동·식물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동·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)
2.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
  - 가.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「어장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·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
  - 나.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, 폐어구, 플라스틱류, 냄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
3.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하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  
: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"이산화탄소 스트림(Stream)"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성질과 상태, 해저지질구조와 위치,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4.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, 대상지역,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가.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
  - 나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
  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

비고

1. 액상은 수분의 함량이 95%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% 미만인 것을 말한다.
2.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.